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 공고 제2005-22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170호 : 2005. 2. 7. 공포)당시 동 규칙 제3조 별표2에서 20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정하면서 일부시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결과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는 악취배출시설이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배출시설별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고란에 표시하는 등 악취배출시설 분류표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재구성 함.

나.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있는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 추가 하도록 함.

다.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 부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 함.

라. 비고란의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란에 포함하고,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함.

환경부 공고 제2005-22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5.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 · 공포(법률 제7562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

도록 함(안 제6조).

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검출률이 낮아 관리필요성이 적은 1,4-디클로로벤젠을 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7조제2항제6호 삭제).

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시공사 및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마. 실내공기질의 측정기관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함(안 제11조).

바. 오염도검사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3조).

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의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을 삭제함(현행 부칙 제2조 삭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8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제6조중 "별표 4와 같다."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령 제15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포름알데히드 210$\mu g/m^3$
2. 벤젠 30$\mu g/m^3$
3. 톨루엔 1,000$\mu g/m^3$
4. 에틸벤젠 360$\mu g/m^3$
5. 자일렌 700$\mu g/m^3$
6. 스티렌 300$\mu g/m^3$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2005-2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불법 · 과잉정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법률 제7295호, 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 재산이나 동 · 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정비업 정비대상 차량(안 제92조의15)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중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초과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자동차 등은 지정된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함.

나. 지정 절차(안 제92조의16)

시 · 도지사는 지정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되,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 기준(안 제92조의17 별표27의8)

전문정비업소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정하되, 시설기준이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체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라. 전문정비업체 사후관리(안 제92조의18)

(1) 시 · 도지사는 정비업체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비능력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일정 수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보 및 검사기관에 게시하도록 함.

(2) 검사기관은 차량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검편의를 제공

마.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중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함(안 별표1 및 별표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5 내지 제92조의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5(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등)①법 제37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휘발유 · 가스 · 알콜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1개 항목 이상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2.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측정 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120% 이상 초과한 자동차
3. 제85조 별표24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되거나 훼손되어 관능 ·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정비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49호의11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재검사 시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해당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제92조의1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16(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9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동차 제작사 사후관리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업체에 한한다)
4.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9조의10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92조의13제3항의 규정은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의17(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표 27의8과 같다.

제92조의18(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관리 등)

① 시 · 도지사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 매년 정비능력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정비능력?수준이 떨어지는 업자에 대하여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 정비능력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시 ·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검사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제92조의15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11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에 기록된 정비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정비업자 평가기준 등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에 제53호 내지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54. 에텔렌 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별표 2에 제26호 내지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27. 에틸렌 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티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별표27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제92조의17 관련)

1. 시설 및 장비

장비 및 시설	휘발유분야	경유분야	종합연료분야
가. 리프트 또는 피트 1조 이상	○	○	○
나. 배출가스측정기(CO, HC, NOx)	○		○
다. 광투과식(부분유량)매연측정기		○	○
라. 엔진전자제어진단기	○		○
마.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바. 분사노즐시험기		○	○
사. 기타 점검 · 정비에 필요한 공구	○	○	○

비고: 1. 배출가스측정기 및 광투과식매연측정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 · 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자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정비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	확보기준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비고: 1. 정비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33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의9	지정취소		
(2) 법 제37조의8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의9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 법 제37조의9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의9			
(가) 법 제3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나) 법 제3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다) 법 제3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9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9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별지 제49의9 서식 내지 별지 제49조의11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예기간) 제92조의17 및 별표27의8제2호 비고 1의 규정에 의한 정비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환경부공고 제2005-21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을 정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정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2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나. 폐전주 철거시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플라스틱 카바류 등의 보관방법을 정함(안 제6조의4제1항제1호 개정).

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장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개정).

라.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에서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정함(안 제23조제3항제4호 개정).

마.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정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개정).

바. 행정처분(영업정지)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64조제2항 개정).

사. 시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간 · 오지 지역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4 개정).

아.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잔류탄소, 수분 및 침전물, 회분의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함(안 별표 4 개정).

자.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2008년부터는 시간당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기준으로 강화함(안 별표 8 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2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항의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에너지회수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다음 각호의 검사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소설비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2. 에너지설비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열회수 검사를 포함한다.)
3. 폐유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투입폐기물의 성상 및 열회수 효율 등을 년1회 이상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시설 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4제1항제1호중 "폐전주"를 "폐전주(폐전주 철거시 발생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플라스틱 카바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플라스틱 카바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제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23조제3항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국환경자원공사

마.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유역(지방)환경청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해당업소가 영업정지 될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1)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 운반"을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으로 하고, 동표 동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동호동목(4)중 "소각 ·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를 "소각 · 퇴비화 · 사료화 · 소멸화 ·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 재활용공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 · 오지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표 제4호가목(2)중 "폐기물은"을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으로 하고, 동표 제6호가목(4)중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검은색 글씨로 하여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 ·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표 동호다목(2)(나)①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유화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화방법 :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 등을 첨가 혼합하여 기계적방법, 화학적 방법, 초음파 방법 또는 위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를 시켜야 한다.
- 유화된 입자의 크기 :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 안정성 : 유화된 정제연료의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물의 첨가율(함수율) : 유화정제 연료유에 대한 물의 첨가율은 부피 비율로 15%이하로 한다.
- 유화제(첨가제) : 유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유화제는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켜서는 아니된다.

비고 :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유화정제 연료유"란 약품정제, 감압증류, 열분해 및 기타방법에 의해 정제된 정제연료유 및 중금속, 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그 반제품에 물과 유화제등을 첨가하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표 동호다목(2)(나)④㉮중 "2퍼센트 이하"를 "4퍼센트 이하"로, "0.03퍼센트 이하"를 "0.15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표 동호다목(2)(나)④㉯중 "0.5퍼센트 이하"를 "1.0퍼센트 이하"로, "0.02퍼센트 이하"를 "0.5퍼센트 이하"로, 유화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이하로 하며, 동표 동호다목(2)(나)④㉰중 "0.5퍼센트 이하"를 "1.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표 제7호다목(1)(다)②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동호동목(1)(라)중 "치수"를 "용량과 치수"로 한다.

(1) 제9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단, 제9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

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별표 6 제2호마목(1)(가)2)중 "약품정제 기타 방법"을 "약품정제 방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하며, 동표 동호동목(1)(가)2)에 ○유화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유화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약품정제, 감압증류, 열분해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화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 내부용적 합계 4㎥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 내부용적 합계 3㎥ 이상 1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 시간당 처리능력 7.5㎥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 시간당 처리능력 5㎥ 이상 1기 이상
  - 혼합장치 :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 이상 1기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별표 6의2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제연료유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 · 공급시설 ·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7 제1호마목(1)제목중 "사료화 · 퇴비화 · 소멸화시설"을 "사료화 · 퇴비화 · 소멸화 · 부숙토생산시설"로 하고, 동표 동호동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숙토생산시설은 별표4 제3호라목(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가)⑤㉮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동호동목(4)(가) 제목 및 동표 동호동목(4)(가)①중 "퇴비화 시설"을 "퇴비화 시설, 부숙토생산시설"로 하며, 동표 동호동목(4)(가)③중 "사료화 · 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 등 폐기물"을 "사료화 · 퇴비화 · 부숙토생산 및 소멸 · 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 또는 잔재물"로 한다.

4.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1의2 제2호다목(3)중 "50퍼센트 이상"을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동표 동호동목(5)중 "별표 8 제2호나목(2)(자)"를 "별표 8 제2호나목(2)(차)"로 하며, 동표 제4호의12중 "폐자동차, 폐가전제품"을 "폐자동차(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을 포함한다), 폐가전제품"으로 하고, 동표 동호중 "파쇄하여"를 "파쇄?용융 · 추출 등의 방법으로"로 하며, 동표 제4호의18중 "탄화시켜 활성탄을 제조하는 경우"를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2 비고 1중 "제7호, 제46조제3항 또는 별표 11의2 제4호의15"를 "제7호 또는 제46조제3항 별표 11의2 제4호의1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239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항만물동량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장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유자 변경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에 따른 신고제도 마련

나. 항만시설장비설치신고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장비의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 시설장비 관리효율 향상을 도모코자 함.

나.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는 시작일 3일전까지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은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검사가 완료되어야 교부가 가능하므로, 설치신고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다. 정기검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코자 함.

라. 항만시설장비의 검사결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장비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장비사용 중지, 특별검사 및 원상회복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마. 기타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 시설변경 등 항만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312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장래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안 제20조의4),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31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 부과내용을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규모(공사금액, 건축면적)별로 일률적으로 정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인력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3인 및 시험실 100제곱미터를 품질관리자 2인 및 시험실 50제곱미터 등으로 축소·조정함.

(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나.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

(1)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2)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의 장은 부과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공개함.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11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환경설비운영관리(Operation & Maintenance) 전문가양성 및 보수과정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11월 18일(금)
• 장소 |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 교육장
• 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www.keef.or.kr